

투자위험등급:
4등급
[낮은 위험]

KB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kb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1년 03월 2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1년 03월 3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  자산운용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962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1) 모자형(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금액이 예정금액 미달시에는 그 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모집장소: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962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 짜	주 요 내 용
2008.12.31	최초설정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 투자신탁명칭을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채권투자신탁'에서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투자신탁(채권)'으로 변경
2010.03.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
2011.03.31	모자형으로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 상 정해진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02-2167-8200)

※ 자세한 내용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11년 03월 29일 기준)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 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문동훈	1959년	상무이사	86개	28,477억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7년 11개월 한양증권 자본시장팀 1년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3년 5개월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고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써 이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여 투자하는 다른 자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자집합투자기구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신탁재산의 90%이상 투자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관한 사항

모집합투자기구 명칭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국내 채권에 70%이상(국공채에 70%이상), 어음에 30%이하로 투자
	투자목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가격변동이 작고 부도위험이 없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국공채에 70%이상 투자하고, 국공채를 제외한 채권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우량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신용위험 최소화 추구 2) 유동성 자산(단기자산)은 우량은행의 CD, 콜론과 현금화 가능한 단기 국공채, 통안채, 우량 금융채 위주로 운용하여 시장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3) 가중평균만기(펀드 듀레이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한 금리예측에 따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운용효율성 증대를 추구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가격변동이 작고 부도위험이 없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신탁계약서 제2조 제8호에 의한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90%이상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
② 유동성자산 등	10%이하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③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나. 집합투자기구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②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채권	70%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국공채	70%이상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②	어음	3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금리스왵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⑤	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⑥	증권의 대여	증권의 50%이하	
⑦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⑧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이하	
⑩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③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 가.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나. 집합투자기구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①~③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①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마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③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채권관련 파생상품 투자</p>	<p>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p>
<p>후순위채권 투자</p>	<p>집합투자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투자한도 적용의 유예</p>	<p>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 집합투자기구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산의 90%이상을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p>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투자전략</p>
<p>가격변동이 작고 부도위험이 없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및 우량 회사채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p>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은 국공채를 70% 이상 투자하고, 국공채를 제외한 채권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우량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신용위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2) 유동성 자산(단기자산)은 우량은행의 CD, 콜론과 현금화 가능한 단기 국공채, 통안채, 우량금융채 위주로 운용하여 시장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가중평균만기(펀드 듀레이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한 금리에측에 따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운용효율성 증대를 추구합니다.
- 4) 채권에서의 이자 수익 이외에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 (가) 수익률 곡선 전략: 만기가 가급적 짧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만기구조를 갖는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만기까지 높은 이자수익을 얻는 동시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보유채권은 단기채권이 되고 수익률도 낮아져 보유채권의 가격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
 - (나) 상대가치 매매 전략
 - 평균을 중심으로 변동하는 같은 종류(국채, 통안채 등)의 장기채권금리와 단기채권금리의 차이 변화를 활용하여 단/장기 채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채권을 매도하고 싼 채권을 매입하는 전략
 - 국채와 우량 채권간의 금리 차이 변화 등 이종 채권의 금리 차이의 변화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싼 채권을 매입하는 전략
 - (다) 집합투자기구의 가중평균 만기(듀레이션) 조절 전략: 철저한 거시경제분석 및 채권시장 전망에 의거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가중평균 만기 및 장단기 투자비중(채권 및 유동성자산 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 참고지수: KIS 국공채 5년 이내 * 75% + KIS AAA 등급 은행채 3년 이내 지수 * 25%

- 정의: KIS채권평가에서 제공하는 채권지수를 이용하여 KB자산운용에서 자체 생성한 채권지수로서, 5년 이하의 국공채와 3년 이하의 산금채, 중금채를 75%, 3년 이하의 은행채를 25%의 비율로 합성해 생성한 지수
- 선정사유: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고, 선별적인 우량 금융채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및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생성해 이를 참고지수로 선정하였음

※ 참고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www.kbam.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위험 관리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에서 위험 관리를 수행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 관리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위험 관리전략

- 1) 운용전략위원회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합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성격 및 공모/사모 펀드 구분에 따른 운용부서의 세분화를 통해 운용팀내 투자 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 3) 기본적으로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수익자의 수익극대화도모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기업(내부/외부 리서치 활용 및 신용평가기관 업무협정)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 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4)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의 운용전략회의를 통해 선정한 Universe(투자후보종목 군)에서 투자종목선정과 분산투자를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5) 포트폴리오 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7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에 9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국공채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에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집합투자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현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환매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산의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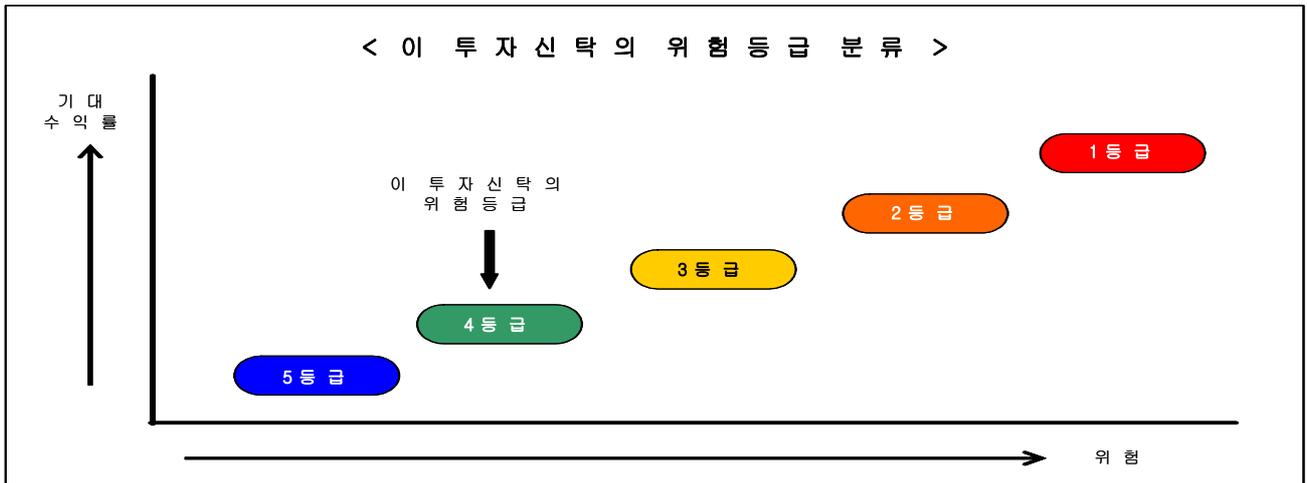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5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KB자산운용(주)은 투자위험 등급을 5개의 등급(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중간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로 나눕니다.

위험분류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반면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의해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할 목적의 집합투자기구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BB+이하)에 5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50% 이상이 환위험에 노출된 집합투자기구 ▪ 원금손실가능성이 주식형과 비슷한 구조의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예, 인덱스펀드, 원금의 50% 이상 손실이 가능한 구조의 구조화 상품) ▪ 부동산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국외 대체투자사업(파생상품 제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반면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의해 높은 위험을 감수할 목적의 집합투자기구 ▪ 주식에 40%이상 60%미만으로 투자하는 주식혼합형 집합투자기구 ▪ 원금손실이 원금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되어있는 구조화 상품 ▪ 일반적인 대체투자사업(파생상품 제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보다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적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을 감수할 목적의 집합투자기구 ▪ 주식에 40%미만으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 ▪ 투자적격 등급이지만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BBB등급의 회사채 또는 A3등급의 기업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회사채 등급 BBB-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인 회사나 단체의 신용보강이 있는 대체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단, 국외 대체투자사업은 회사채 등급 A-이상인 회사나 단체의 신용보강 및 담보가 있는 경우. 예)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출자나 대출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선박·항공기 담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 오피스건물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장기채권 위주 또는 회사채 위주로 투자하여 낮은 위험을 추구하는 목적의 집합투자기구 ▪ 펀드의 듀레이션이 3년 이상인 장기국공채권형 집합투자기구 ▪ 회사채 A-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집합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구조화 상품으로 원금보장추구형이지만 원금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 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대체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사업자구책사유 이외의 협약해지시 원금회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채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단기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여 매우 낮은 위험을 추구하는 목적의 집합투자기구 단기국공채형 집합투자기구 또는 MMF 원금보장추구형 구조화 상품 중에서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여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이 집합투자기구의 원금손실에 영향이 적은 집합투자기구

주) 이 기준은 KB자산운용(주) 내부기준으로 주로 시장리스크를 가장 큰 리스크요인 사항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편입된 자산의 신용리스크에 따라서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집합투자증권의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단,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함)
 -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의 다음 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T)	제2영업일(T+1)	제3영업일(T+2)
17시(오후 5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3영업일(T+2)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환매금액 지급
 - 2)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4영업일(T+3)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T+3)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T)	제2영업일(T+1)	제3영업일(T+2)	제4영업일(T+3)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3) 환매수수료
 - 1)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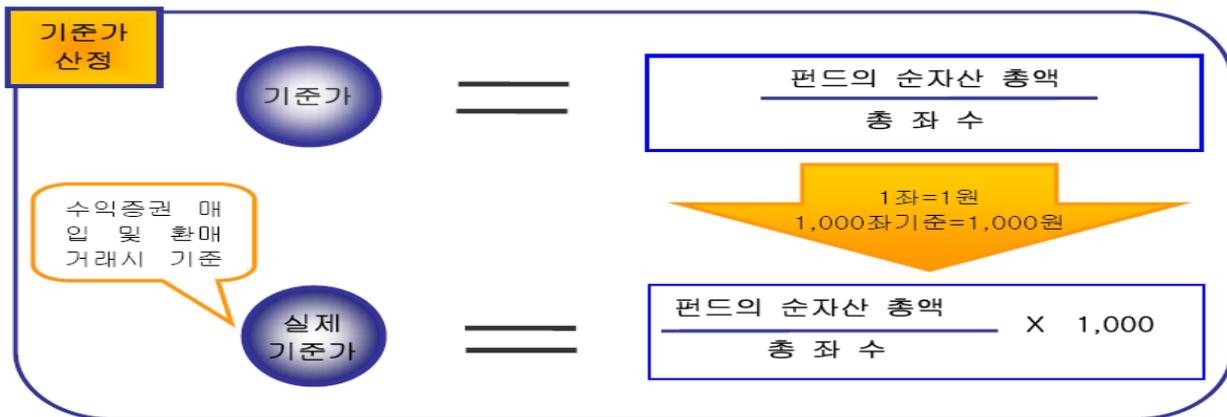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가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179%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연 0.279%	
신탁업자보수	연 0.02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	
투자신탁보수 합계	연 0.493%	
기타비용	연 0.015%	사유발생시
모펀드 기타비용	연 0.015%	사유발생시
합성 총 보수·비용비율 (모 펀드 비용 포함)	연 0.523%	
증권 거래비용	연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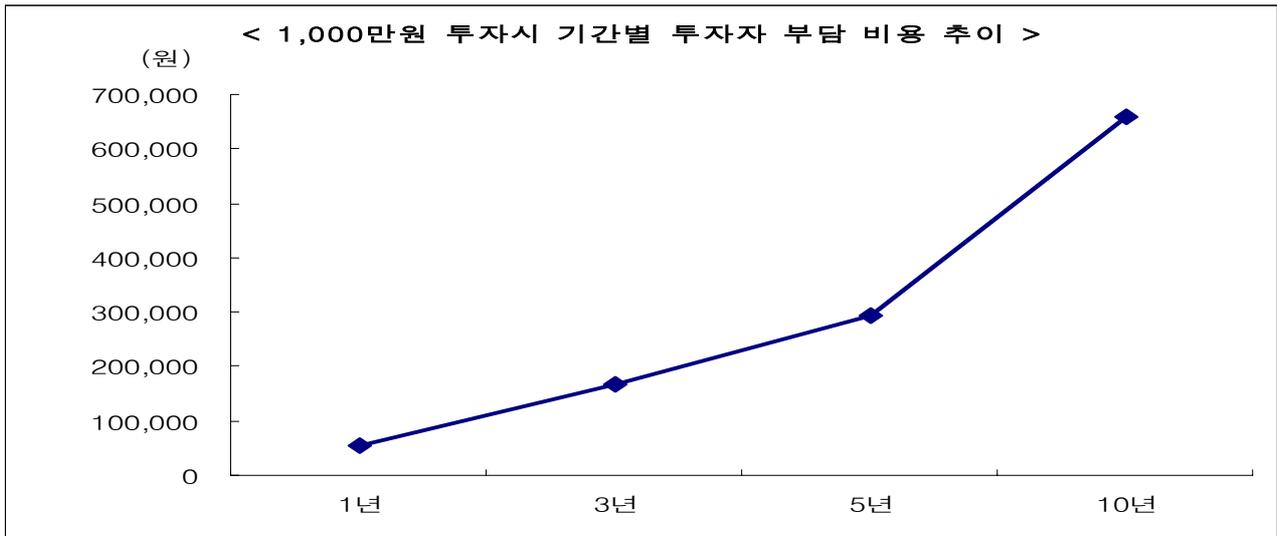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이 집합투자기구에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09.12.31~2010.12.30)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09.12.31~2010.12.30)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에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한 기타비용을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합산한 총 보수·비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text{합성 총 보수·비용비율(모펀드 포함)} = \frac{(\text{자펀드 기타비용} + \text{모펀드 투자비율에 따른 기타비용}) + \text{자펀드 총보수}}{\text{순자산 연평균잔액}} \times 100$$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구분	1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3,642원	168,100원	293,458원	660,400원

-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 (3)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이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10.12.30)	(2009.12.30)	
운용자산	8,630,274,758	2,334,151,224	0
증권	8,287,739,998	2,154,741,059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42,534,760	179,410,165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92,053,096	173,881,299	0
자산총계	8,822,327,854	2,508,032,523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8,873,491	3,116,617	0
부채총계	8,873,491	3,116,617	0
원본	8,352,556,818	2,393,993,378	0
수익조정금	257,211,348	-141,885,512	0
이익잉여금	203,686,197	252,808,040	0
자본총계	8,813,454,363	2,504,915,906	0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09.12.31 - 2010.12.30)	(2008.12.31 - 2009.12.30)	
운용수익	222,472,539	290,879,768	0
이자수익	131,493,257	221,935,675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90,979,282	68,944,093	0
기타수익	1,760,660	118,883	0
운용비용	19,051,690	36,523,351	0
관련회사 보수	19,043,690	36,011,351	0
매매수수료	8,000	512,000	0
기타비용	1,495,312	1,667,260	0
당기순이익	203,686,197	252,808,040	0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매매회전율: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함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2기(2010.12.30)		제1기(2009.12.30)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342,534,760		179,410,165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8,880,760		64,918,165			
2. 예치금						
3. 증거금	123,654,000		114,492,000			
대출채권		0		200,000,000		0
1. 콜론			200,00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8,287,739,998		1,954,741,059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8,287,739,998		1,954,741,059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92,053,096		173,881,299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92,053,096		173,881,299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8,822,327,854		2,508,032,523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469,465,096		114,039,145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8,873,491		3,116,617			
5. 기타미지급금	460,591,605		110,922,528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469,465,096		114,039,145		0
자 본						
1. 원 본	8,352,556,818		2,393,993,37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0		0			
(발행좌수 당기: 8,352,556,818 좌 전기: 2,393,993,378 좌) 전전기: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8,352,556,818		2,393,993,378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822,021,914		2,508,032,523		0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2기(2009.12.31-2010.12.30)		제1기(2008.12.31-2009.12.30)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33,253,917		222,054,558		0
1. 이 자 수 익	131,493,257		221,935,675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1,760,660		118,883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00,767,070		133,365,997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99,277,033		79,088,396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1,490,000		54,275,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37		2,601			
7. 기타거래차익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9,795,788		64,933,904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7,462,760		38,489,441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2,328,000		26,387,0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5,028		57,463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20,539,002		37,678,611		0
1. 운용수수료	7,131,446		13,485,444			
2. 판매수수료	11,115,602		21,019,323			
3. 수탁수수료	796,642		1,506,584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495,312		1,667,26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03,686,197		252,808,040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24386089		0.10560097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원, 억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12.31 - 2010.12.30	24	24	84	87	24	25	84	84
2008.12.31 - 2009.12.30	0	0	145	147	121	125	24	24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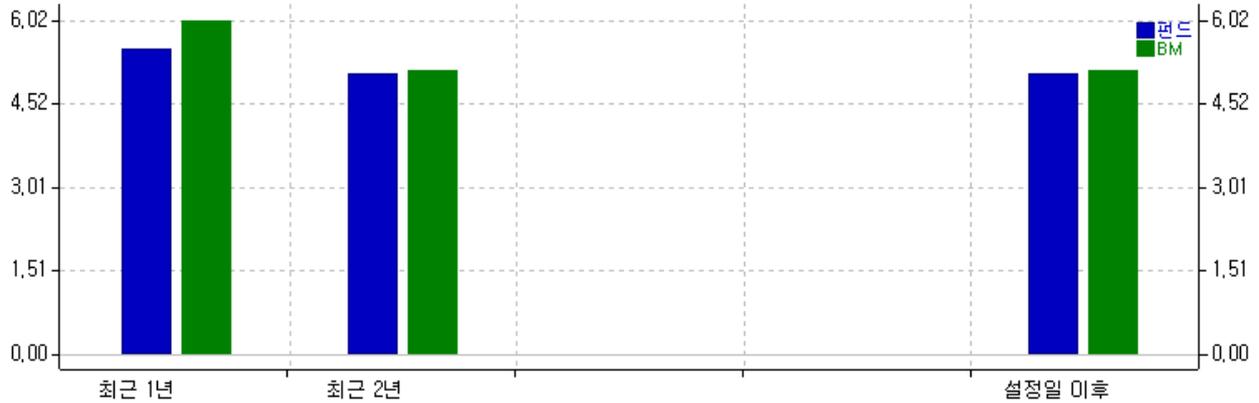
운용실적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집합투자기구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준일: 2010년 12월 31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집합투자기구	5.51%				5.51%
참고지수	6.02%				6.02%

※ 참고지수 = KIS 국공채 5년 이내 * 75% + KIS AAA 등급 은행채 3년 이내 지수 * 25%

※ 참고지수 수익률에는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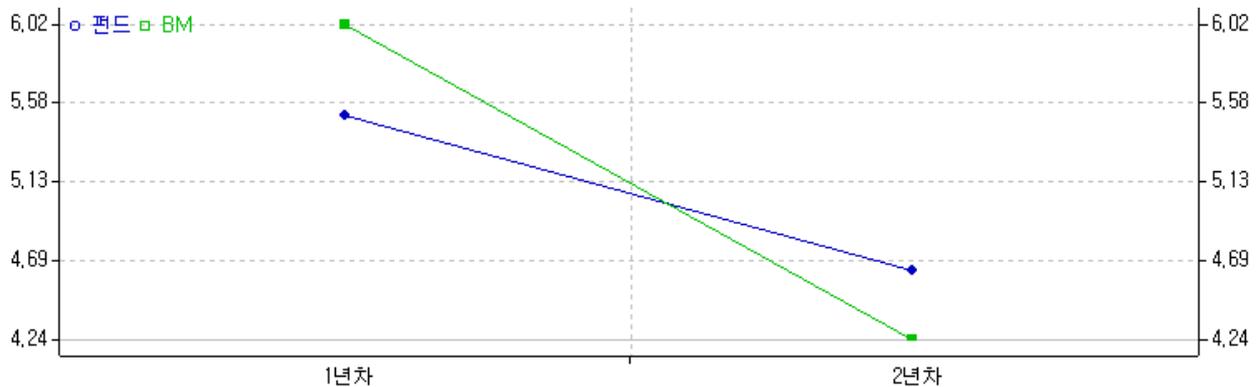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준일: 2010년 12월 31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집합투자기구	5.51%	4.63%			
참고지수	6.02%	4.24%			

※ 참고지수 = KIS 국공채 5년 이내 * 75% + KIS AAA 등급 은행채 3년 이내 지수 * 25%

※ 참고지수 수익률에는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단위: 억원, %)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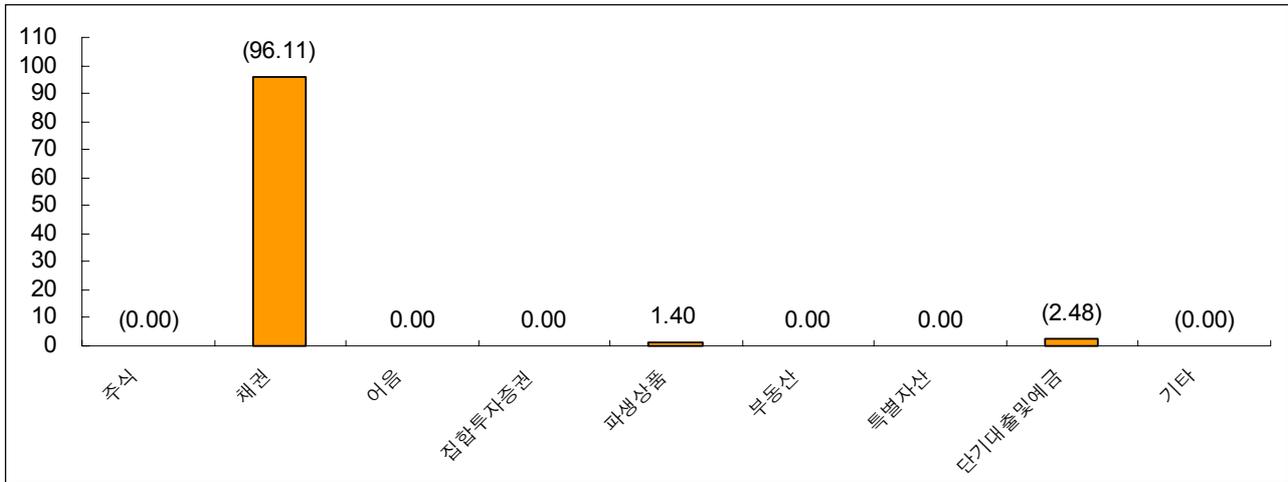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이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기준일: 2010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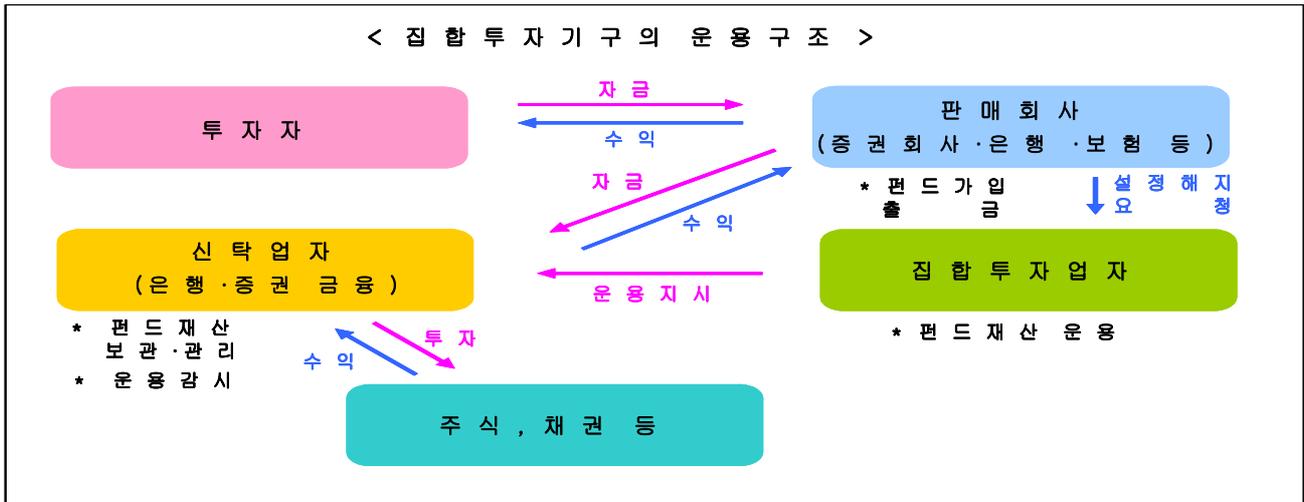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85	0	0	1	0	0	0	0	2	0	88
	(0.00)	(96.11)	(0.00)	(0.00)	(1.40)	(0.00)	(0.00)	(0.00)	(0.00)	(2.48)	(0.00)	(100.00)
합계	0	85	0	0	1	0	0	0	0	2	0	88
	(0.00)	(96.11)	(0.00)	(0.00)	(1.40)	(0.00)	(0.00)	(0.00)	(0.00)	(2.48)	(0.00)	(100.00)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 어음에는 CD를 포함함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B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빌딩 ☎ 2167-8200
주요 연혁	1988.04.27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주)'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주은투자자문(주)'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주)'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주)'에서 'KB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주)국민은행 → (주)KB금융지주
자본금	38,337,750,000원
주요주주	(주)KB금융지주 100%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국민은행(계열회사)

나. 주요 업무

-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4)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 목	제22기	제21기
기 간	2010.03.31	2009.03.31
자산총계	111,134,685	103,668,552
현금 및 예치금	63,597,221	84,975,242
유가증권	30,298,588	3,848,754
대출채권	1,986,336	1,817,981
유형자산	71,059	117,552
기타자산	15,181,481	12,909,023
부채총계	8,560,818	30,159,061
예수부채	1,070,428	19,495,010
기타부채	7,490,390	10,664,051
자본총계	102,573,867	73,509,491
자본금	38,337,750	38,337,750
이익잉여금	63,877,829	36,066,68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8,288	105,058
부채와 자본총계	111,134,685	103,668,552

(2)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 목	제22기	제21기
기 간	2009.04.01~2010.03.31	2008.04.01~2009.03.31
영업수익	67,189,021	68,915,230
영업비용	28,630,273	29,788,062
영업이익	38,558,748	39,127,168
영업외수익	20,125	32,781
영업외비용	455,903	448,206
경상이익	38,122,970	38,711,743

법인세 등	9,311,824	10,847,363
순이익	28,811,146	27,864,380

라. 운용자산 규모

(2011년 03월 29일 현재, 단위: 억좌)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재간접형					
수탁고	48,393	12,410	17,085	7,922	4,822	6,037	26,123	0	60,670	183,46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전화번호	☎ 1588-1111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abank.com

나. 주요 업무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투자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국민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전화번호	☎ 1588-9999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나. 주요 업무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주)	한국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전화번호	☎ 02-3215-1450	☎ 02-399-3350	☎ 02-398-3900
인터넷 홈페이지	www.bond.co.kr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나. 주요 업무

-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이 집합투자기구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두며, 투자자총회는 법령, 집합투자계약 및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1) 투자자총회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2)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투자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투자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1)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변경(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합병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투자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투자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투자자총회의 집합투자기구 해지 결의,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¹⁾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해당 주체¹⁾: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 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투자자총회의 집합투자기구 해지 결의
- (3)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4)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집합투자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3)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라)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4) 투자자총회의 의결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계			
KB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채권	1,012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2010-03-09	KB자수성가장기주택마련40(채권)	국민주택1종6-3 매도	348	기타
2010-11-01	KB스타법인용MMF I-101호(국공채)	국민주택1종06-05 매도	228	기타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 기준
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p>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주) 내부통제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p> <p>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 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p> <p>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등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의 투자를 하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 60%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증권의 운용비율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집합투자재산을 주로 단기성 자산(콜론, CP, CD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정해진 비율 없이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해당 모펀드에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집합투자재산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료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참고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참고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거래상대방과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로 사모펀드에서 적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특정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미리 정하여진 전환가격에 기초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KB 코리아 스타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